

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  
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 고광민 의원입니다.  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 
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- 정비계획 입안요청 및 제안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도  
기존 서면동의 방식 외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 
조례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
동의서 징구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 
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.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,  
정비계획의 입안요청 시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,  
본인확인 방법 등 세부사항은 상위법령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.  
  
또한,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도 전자서명동의서를  
제출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였고,  
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 
이미 실시된 전자서명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 
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 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 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